간행물등록번호
총무인사-200-6-7-18-5

정보공개 업무편람

2018. 5.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Ⅱ. 공공기관의 의무 4
Ⅲ. 정보공개 심의회 8
Ⅳ. 정보공개 청구 10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11
2. 공개방법 11
3. 청구권자 12
4. 청구방법 13
5. 접수 및 이송 13
Ⅴ. 정보공개 처리 15
1. 정보공개 여부 결정 15
2. 제3자 의견청취 17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18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18
5. 정보공개 실시 19
가. 공개결정 19
나.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21
다. 부분공개 22
6. 정보부존재 처리 23
가.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3
나. 정보부존재 처리절차 27
다.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27
7. 진정·질의 처리 28
8.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28
9. 비용 부과·납부 29
10. 동일·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31

목 차

Ⅵ. 불복구제 방법 32

1. 이의신청 32
2. 행정심판 34
3. 행정소송 35

Ⅶ.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36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1호] 36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 37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관련 정보 [제3호] 38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39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제5호] 41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46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제7호] 51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8호] 55

Ⅷ. 결정통지 표준서식 56

【부록】

1. 수수료 66
2. 서 식 68

FAQ

1.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 87
2. 비공개 이유제시 의무 87
3.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87
4. 정보공개 청구시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88
5.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88
6. 비밀유지의무와 정보공개 관계 88
7.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범위 89
8. 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89
9.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89
10.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90
11.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90
12. 공개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권 90
13.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 청구 91
14. 한시적 비공개 92
15.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방안 92
16.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93
17.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93
18. 제3자의 범위 및 송달의 방법 93
19.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94
20. 제3자 의견청취 시 청구자의 신상공개 타당성 여부 94
21.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공개 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 이유 94
22.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 실시일 95

FAQ

23.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 점수가 공개 가능한지 96
24.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96
25.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 공개청구 97
26.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97
27.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97
28.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공개 가능 여부 98
29.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98
30.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 청구 99
31.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 청구 99
32.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 청구 99
33. 심의회나 위원회의 회의록은 모두 비공개대상정보인지..... 100
34.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 청구 100
35. 시청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 공개가능 여부 101
36. 소송제기(개인권리구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101
37.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 청구 102
38.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 103
39. 도면 정보공개 청구 103
40.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대비표 등 공개가능 여부 104
41. 입찰이 종료된 이후 추정금액, 산출근거가 비공개대상이 되는지 여부 104
42.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105
43. 임금협정서 공개가능 여부 105
44.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106
45. 지출증빙 중 개인정보 또는 공무원 정보 106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청구권이 있음

2 법적 근거

-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내규**
  - 정보공개운영관리내규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인 보장 필요

국정에 대한 신뢰제고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제고

4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하여야 함(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

❖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과 이를 비공개하여야 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 수립·공개(법 제9조 제3항)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법 제4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으로서 적용

☞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 법 간의 충돌·모순을 해소

정보공개법 적용 유의사항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불가하며, 정보 공개·비공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여부로만 결정

❖ 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민원으로 안내

Ⅱ. 공공기관의 의무

1 정보공개 원칙[법 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2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 정비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 정비

3 행정정보의 공표 등[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 공공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관련 정보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공개대상 정보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4 행정목록의 작성·비치 등[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
  - 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라도 목록을 작성·공개하여야 하나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제외

5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법 제9조 제3항]

▸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직제에 명시 된 팀별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 부서명 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대비하여 별도로 시행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최신판례의 인용,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경우 신속·재분류

❖ 직제규정 등으로 소관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보완·공개

6 정보공개 청구내용의 확인 및 안내

불필요한 청구의 방지 및 이의신청 사전예방

❖ 정보공개 접수담당 공무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사전공표 및 정보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 이를 위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함(대법원 2007두25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

❖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개청구자에게 있음(대법원 2010두14800)

❖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대법원 2003두 12707판결)

Ⅲ. 정보공개 심의회

1 심의회 개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5인(당연직 3명, 위촉직 2명)
- 위 원 장 : 총괄부서장
- 외부위원 :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해당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심의회 운영

심의회 심의대상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심의 예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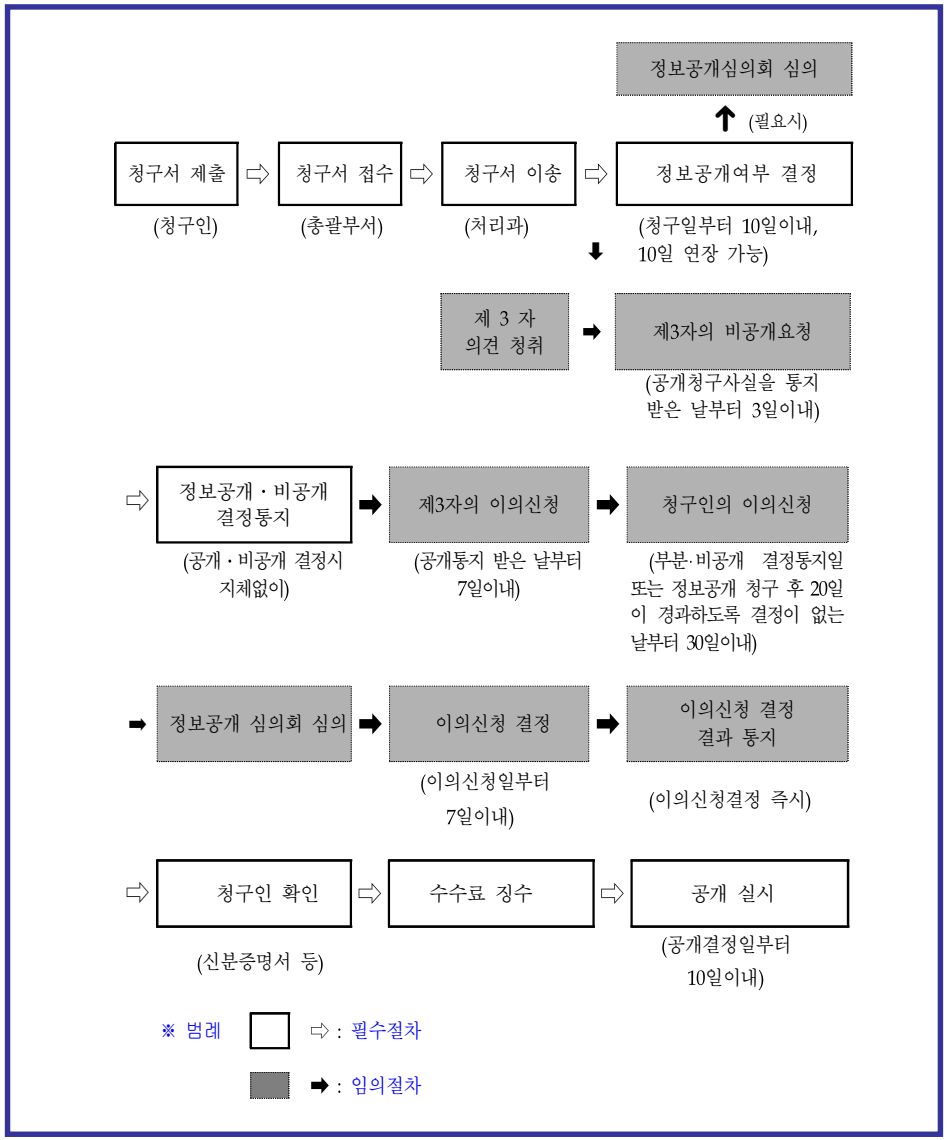
- 비·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공개·부분·비공개 결정을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대법원 2001추 9513)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21조 제2항)

Ⅳ.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함
-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법제처 12-0188, 2012.4.20.)
- 전산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자료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자료(대법원 2010. 2. 11. 2009두6001)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경우(서울행법2008. 4. 16. 2007구합31478)

2 공개방법

▸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법 제2조 제2호)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대법원 2002두2918)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안내

※ 해당 정보의 소재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본・복제물・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3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법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14-0242, 2014.8.14.)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말로 청구하는 경우

❖ 담당 직원의 앞에서 진술

❖ 담당 직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5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총괄부서]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동법 시행령 제6조)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4항)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발급 생략(동법 시행령 제6조)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소관부서 분류

-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로 분류
-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총괄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

소관 기관 이송(법 제11조 제4항)

- 접수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우선 처리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처리(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

Ⅴ.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 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방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 함께 검토
-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 통해 결정

♣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 '청구목적'의 확인이 필요함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 신청의 경우 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시행령 제7조)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의 경우

2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별지 제6호)
·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법 제21조)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부분공개)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 접수번호·일자,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음

필요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

❖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의견 제출을 문서로 하여야 함(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 통지

※ 공공기관 정보공개 결정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08두8680 2008.9.25.)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공개 여부의 결정은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법 제13조, 법제14조)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
-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 청구인 및 제3자에게 통지

부분(비)공개 결정

-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부분(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 기재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

> ♣ 단순히 각 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5 정보공개 실시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개결정 통지서
- 정보공개 방법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
-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가. 공개결정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경우는 제외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시행령 제12조 제3항)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정보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
  -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허락 하에 공개방법 변경 가능(대법원 2003두 8050)

❖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5두 15694)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

❖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3조 제3항)

-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

❖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로 볼 수 없음

❖ 열람의 제공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정보의 전자적 공개(법 제15조)

-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이나 매체에 저장·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 CSD 파일로 변환되어 제공된 정보를 청구인이 엑셀 형식 등으로 개

인 메일을 통해 받고자 하는 경우, 관인 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 가능

출력물의 진본성 확인 여부

❖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간인'이나 '원본대조필' 표시를 따로 날인할 필요성과 의무는 없음

❖ 다만, 청구인이 소송자료 등 중요한 용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인

나.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대 상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처리방법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임의서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분리가능성 판단기준 및 처리방법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비공개, 공개)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법 14조)

-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으므로

-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부분공개시 통지

❖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6 정보부존재 처리

<판단기준>	<처리방법>
① 실제로 생산·접수하지 않는 경우 ② 취합, 가공이 필요한 경우 √보유관리 형태대로 공개 ③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 √공개결정시점 기준, 실제 폐기여부 ④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사회 일반인의 관점	① 정보부존재 ▸ 구체적인 부존재 사유를 적어 처리 ▸ 처리기한 : 7일 ② (비)공개+정보부존재 함께 청구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에 '부존재'사유 기재 ▸ 처리기한 : 10일

가.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 기관의 정보목록 및 관련 시스템에서 청구 받은 정보의 검색가능 여부

❖ 청구 정보가 관련 법령(직제), 업무 분장, 업무 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업무인지 여부

❖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접수되는 시기가 未도래 경우

❖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 등이 요구되는 경우

☞ 기관의 '생산·접수' 여부 판단 시 '상당한 개연성' 여부로 판단

≪ 유의사항 ≫

❖ 당해 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청구인이 대상기관을 이미 알고도 당해 기관에 청구하였거나, 이송대상 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이송처리 않고 기관 안내 후 정보부존재 처리(법제처 해석례10-0251)

♣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의 존부를 판단

※ '상당한 개연성' 인정 판례

· (행심 2004) 법무부가 수용중인 약물환자의 일반현황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 ○○노동청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 건수와 평균 민원처리기간을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 (서울행법 2005)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필요는 없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됨

※ '상당한 개연성' 불인정 판례

· (서울행법 2007) KBS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갖고 있을 개연성 부족

· (행심 2011)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취합 여부의 판단기준 ≫

❖ (기관 外)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제공할 의무는 없음(정보부존재)

♣ 관련 규정 등에 타 기관정보까지 취합·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취합 아님(정보공개)

❖ (기관 內)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정보공개)

- 청구인은 공공기관 대상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고, 부서별로 정보가 나누어져있는 것은 기관 내부의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취합'의 개념이 아님
- 부서별로 특정 정보의 관리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청구인 요구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있는 그대로 취합·제공

≪ 가공 여부의 판단기준 ≫

구분	형태변환	추출	조합
非전자	전자적 형태로 변환 ▸ 스캐너 이용(공개) ▸ 엑셀 등 변환(부존재)	(기존)인허가 서류별 관리 → 층수별, 회사별 통계	(기존)日별 관리 정보 → 年별 관리 정보
		(旣 관리방식과) 다른 기준으로 가공(부존재)	
전 자	▸ 비전자 형태로 변환(공개)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無(부존재)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有(공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無(부존재)	

❖ 非전자 형태(종이 등) → 전자적 형태로 변환

- 非전자 정보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 非전자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은 **가공에 해당**

❖ 전자적 형태 → 非전자 형태로 변환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가능(정보공개)
- 전자적 정보를 非전자 정보로 변환 시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되면 **가공에 해당**

❖ 非전자 정보의 추출

- 기관의 旣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 ○○공사가 관리하는 입사원서를 제출자 출신지·대학별, 소지자격증별 추출은 가공

❖ 전자적 정보의 추출(서울행법 2006구합 4775955))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은 **가공에 해당**

❖ 非 전자 정보의 조합

- 기관의 旣 관리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 전자적 정보를 조합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조합은 **가공에 해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 (보존연한 경과)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폐기) 청구 받은 정보가 실제 보유·관리 대상인지 여부

❖ 청구 받은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연한과 폐기(실제 폐기연월일)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 한 경우

≪ 포괄적 청구'의 판단기준 ≫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00두9212)

❖ 청구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정보부존재)

-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정보부존재)

≪ 유의사항 ≫

❖ 민원처리법 제22조57)에 따라 보완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정보부존재 통지

❖ 보완 요구는 접수 후 즉시 문서·말·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민원인 요구 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영 제24조)

나. 정보부존재 처리절차

각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담당자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정보부존재 처리

❖ 정보공개시스템 상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정보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 상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다.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다만, 공개·비공개 결정과 정보부존재가 함께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7 진정·질의 처리(시행령 제6조 제3항)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

-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시스템 상 통지로 갈음

처리기간 : 7일 이내

8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시행령 제15조)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ml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본인 확인 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기타 외국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본인확인 정도를 달리 정해야 함

9 비용 부과·납부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수수료 산정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비용 감면(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전자 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

> ♣ **전자파일 수수료 감면 사례**
>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비용 감면(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제출받아야함

감면비율

❖ 해당 수수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납부 방법 및 시기(시행령 제17조 제6항)

❖ 현금 징수

❖ 통지 후 청구인에게 해당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 받은 후 공개

• 다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가능

10 동일·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오·남용에 대한 기준이 없고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의 빈도가 많거나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 오·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정보공개 오·남용 판단기준

❖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

동일·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시행령 제6조 제5항)

❖ **동일 정보공개의 청구**

•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여 다시 공개하여도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청구

❖ **반복 정보공개의 청구**

• 정보공개 결정을 받은 자가 동일 내용에 대한 청구를 다시 한 경우 공개·부분·비공개 사유의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 청구가 아님

Ⅵ. 불복구제 방법

1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처리절차≫

이 의 신 청 (청구인 또는 제3자)

↓

접수알림 (총괄부서)
- ▸ 이의신청서 접수 알림(총괄부서→처리과)

↓

제3자 알림 (처리과)
- ▸ 최초 정보공개 청구단계에서 비공개 결정으로 의견청취를 안한 경우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처리과)
- ▸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요청 (처리과→총괄부서)
- ▸ 필요시 기간연장 신청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심의·결정)
- ▸ 심의회 개최
- ▸ 담당부서 장(처리과) : 제안설명(검토의견 설명)

↓

결 정 결 과 통 지
-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행정심판·소송 등
-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이의신청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제2항)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 문서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법 제18조 제4항)

이의신청 결정 종류

❖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인용, 인용으로 구분

2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때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및 법 제21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천광역시)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3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때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제소시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정 종류
- 각하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재결·판결).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재결·판결).
-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가 이유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재결·판결)

Ⅶ. 비공개 대상 정보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대법원 2003두8395)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7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은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47조 , 형법 제126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 1호 관련 판례(해석례) 보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1-0014)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관련 정보(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입법취지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12.4.12., 2010두24913)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11.11.24., 2009두19021)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해당됨(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대법원 2003. 12. 26.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서울행법1999. 2. 25. 98구369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등 정보

❖ 범죄의 예방

-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4호 관련 판례(해석례) 보기 〉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함.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 청구시가 아니라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됨(서울행법 1999.2.25 98구3692)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대법원 2001두 8827)

♣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판단기준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히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9두 19021)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험 관련 정보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 공공기관의 시험의 종류는 700여 건에 이르고, 시험마다 주관부처, 목적, 응시자격, 취득하는 자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해당 부처가 투여할 수 있는 비용 및 노력의 한계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시험정보의 공개범위 등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준만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시험 주관기관의 전문적·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1.3.31. 2010 헌바291)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제2호(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제6호(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 해당여부도 검토할 필요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 5호 관련 판례(해석례) 보기 〉

▸ 청구인의 면접채점표, 총 응시자의 면접 채점표 : 비공개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보건복지부 09-11338)

▸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자료 : 공개/비공개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법제처 법령해석 06-0128, 06.8.22)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발언자 명단, 회의록 : 공개/비공개
① 외부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 ② 위원회의 심의회의에 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발언자 명단은 비공개, ③ 일반적으로 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춘천지법 2004구합1207)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 비공개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는 입찰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중앙행심 2011-25236)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154) 또는 자유155)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대법원2014.7.24., 2012다49933)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판단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특정 공무원(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공무원(직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 ♣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수상자 명단)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중앙행정심판위 2007-14671, 2007-19790)의 성명·직위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6호 관련 판례(해석례) 보기 〉

▸ 공공기관 청사 CCTV 녹화물 : 비공개
녹화영상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녹화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갈무리한 다음 각 그림파일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사건 녹화물 중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련된 부분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두25729)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대상자,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 : 공개
지출대상자,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도 지출목적이 공적인 업무에 제한되어 있고 그 집행업무가 기밀성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지출 증빙이 사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실제 집행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정보에 해당(서울고법 2002.8.27. 2001누1724)

▸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등 인사기록 : 비공개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념에 의하여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행정자치부 05-17455)

▸ 시간외근무수당 : 부분공개(국무총리행정심판위 사건번호 06-14443
시간외 근무도 법정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직무수행 시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내역은 공개가 가능하나, 공무원의 성명·직급은 비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급"은 예외적으로 공개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직무수행의 해석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정 근무시간외의 초과근무 사실도 직무수행으로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할 것이므로 공무원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 공무원의 이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 의결서와 회의록 : 공개(국무총리 09-03666, 2009.6.23.)
특정 발언의 발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 심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6호 관련 판례(해석례) 보기 〉

▸ 외부위원명단 공개 : 공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심리 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국무총리 09-04617, 2009.4.28.)

▸ 본인과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서 내용 : 비공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 기본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고,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진정서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중앙행정심판위 05-05)

▸ 공소장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 본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공개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요하므로 공개(서울고법 2005누17067)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통상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연락처(전화번호 등), 그 외 직업·나이 등이 있을 것인데, 그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즉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문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 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자들의 주소·연락처는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증거의 확보 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는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직업, 나이 등의 인적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두 1342)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판단기준

❖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2012두12303)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대법원 2009두1920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2012-24651)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영업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중앙행정심판위 2012-24651)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임(정부법무공단 2012-440, 2012.3.19.)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관련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는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 7호 관련 판례(해석례) 보기 〉

▸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두8302)

▸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 : 공개

국가계약법 제92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제9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등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1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합니다.(법제처 11-0395, 2011.10.7.194)/06-0132, 2006.8.22)

〈 7호 관련 판례(해석례) 보기 〉

▸ ○○기업의 '2012년 ○○대학교 병원에서 산정한 청소용역 원가산정내역서', '청소용역계약서',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낙찰률 관련 자료' : 공개

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원가산정 내역 등이 공개된다고 하여 ○○기업이 다른 용역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영업활동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원고와 같은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현재 근로 조건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곤란한 바,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개함이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059)

▸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공사비 명세 : 공개

참가인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시협약 사항에 따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준공 후에도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매년 피고로부터 도로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교통현황 및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사업완료 후 고속도로 등의 관리·운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피고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가 타당함(대법원 2010두24647)

▸ 집행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 공개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계약단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법령 해석례 06-0037)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됨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Ⅷ. 결정통지 표준서식

1 공개 결정 통지

공개대상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일 자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공개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다만,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URL : 접근경로)에서 누구나 열람·출력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 (홈페이지 내 위치, 열람방법 등 상세 기재)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공개 문서명〕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의 (핵심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상기 자료를 공개합니다.		

2 부분공개 결정통지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대상 문서명 또는 공개정보)		
부 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해당 각호 기재) 2.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 중 (비공개정보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호에 의해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공개 결정통지(제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②「형사소송법」제47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④「국회법」제118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공개 회의 내용 등 (으)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OOO의 증여세 과세 관련 OO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② 대북한 관련 자료 ③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관련 자료 ④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⑤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⑥ 위험물의 저장위치 ⑦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보안감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처분시기, 지역별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대남공작활동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 북한정보기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②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③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④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⑤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변조,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청원경찰 총기보유 현황자료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로서 총기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범죄단체 등에 의한 총기 등의 악용시도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③ 무기·화약·마약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④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⑤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소송관련 소장 및 소송 진행사항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현재 소송 진행중에(사건번호 ○○○○) 있는 정보로서 소송관련 주요 증거자료 및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소송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② 국가고시·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및 출제위원 명단 ③ 개별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④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⑤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 ⑥ 임면·복무·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⑦ 보조금·융자 관련 정보 중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OO부처의 승진심사과정이 담긴 심사회의록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토론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언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보복조치 등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② 학력·학교성적·상벌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 ③ 소유주택·연봉 등 재산상황 ④ 전과기록·교통위반기록·이혼기록 등 법적정보 ⑤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⑥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⑦ 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 등 개인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특정 공무원 8명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 ② 경영방침·자금·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③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 ④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⑤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로서 입찰참가자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심사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여 해당 업체(또는 개인)의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 손상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8호 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용지매수계약서 ② 설계단가표 ③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④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⑤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 택지수용가 및 택지조성원가 등에 관한 정보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8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토지소유자가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는지 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타인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 도면 ·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13.>

인천교통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 천 교 통 공 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1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인 천 교 통 공 사 사 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1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 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직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인 천 교 통 공 사 사 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2. 13.>

인천교통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천 교 통 공 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6. 12. 13.>

인천교통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접수일 및 접수번호	
청구정보 내용	
이송기관, 이송일자	
이송 사유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천 교 통 공 사 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	공개일	수령방법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 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 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 공개, 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 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 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 장소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6. 12. 13.>

인천교통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질의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인 천 교 통 공 사 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16. 12. 13.>

인천교통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인 천 교 통 공 사 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5.28>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 ] 정보공개 허용	[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5.28>

제3자 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의견청취 일시					
의견청취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직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13.>

인천교통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인 천 교 통 공 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교통공사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 12. 13.>

인천교통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 ② 우송료 원 / ③ 수수료 감면액 원 /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인 천 교 통 공 사 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12. 13.>

인천교통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천 교 통 공 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5.28>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 신청일	사건명	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 취지	이유 (처리 결과 요지)	결정 통지일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13.>

인천교통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 천 교 통 공 사 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FAQ

01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은 청구대상이 된 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침해되는 법익이나 기본권,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 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8두3426판결 참조>

02 비공개 이유제시 의무

▣ 행정청은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 및 사실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정당성·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가 추상적으로만 제시되어 처분의 당사자가 어떠한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처분은 위법하 할 것입니다.

▣ 한편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개청구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두1370, 대법원 2006두4899 등 참조>

03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04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

▣ 다만, 기간의 경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해당정보의 공개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05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해석(특별한 규정이 있는 겨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두17384, 대법원 2007두2555 참조>

06 비밀유지의무와 정보공개 관계

▣ ‘아동복지법 제65조’는 아동복지사업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각 조항은 비밀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806>

▣ 사업 실시협약서 제87조 소정의 비밀유지의무(협약의 해지나 종료 후 5년 동안 정보비공개)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들어 정보를 비공개함은 위법하고,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를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07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범위(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

▣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 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08 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은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회 자료요구에는 적용할수 없으며, 따라서 위 법령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16434(2017.10.25.)

09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개별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등을 근거로 검토·결정해야 합니다.

10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판례 참조)

예) “특정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생년월일이 모일부터 모월 모일까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 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추출된 원시정보)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정하여 가공(추출된 원시정보에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11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12 공개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권

▣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두6425, 대법원 2003두8050>

13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필름·테이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09두6001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두12707 판결 참조)

▣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두6001 판결 참조)

▣ 따라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2012두25729 판결 참조)

14 한시적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또는 해당 정보 생산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결정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중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사유가 있어 비공개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졌다면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불복제기를 사전 예방하기 바랍니다.

15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방안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체” 식의 과다 청구인 경우 청구인이 법 제8조에 의거 사전공개 된 ‘정보목록’ 검색을 안내 하는 등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청구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②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우선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하고, 열람방식에 행정행위의 부관인 “조건” 부기, ③열람형식으로 수수료를 철저히 산출하고 수수료 납부 전에는 사본의 복사 지양(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등

16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①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②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해당 제3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공개결정한 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여부에 대한 비교·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목적 (청구취지)’을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 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당해 공공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공공기관은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18 제3자의 범위 및 송달의 방법

▣ ‘제3자’의 의미는 정보공개 청구자와 이에 대한 공개결정 여부의 처분을 하여야 할 공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는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서로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9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 청구인의 신상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나,

▣ 제3자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 제3자 의견청취 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주소란에는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내용과 관련된 청구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는 상세지번을 제외하여 제3자에게 알려주되 청구자에게도 제3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21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2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 실시일

▣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 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 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법제처 06-0058, 2006. 5.10)

23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 점수가 공개가능한지?

▣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 점수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 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업무와 면접위원의 면접평가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4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 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두15936 판결 참조)

▣ 참고적으로 문제은행 출제방식의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출제의 시간·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직접 출제방식의 공인회계사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 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5.12.13.2005구합22128)

25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 공모탈락자의 공개모집(점수표, 심사배점표 및 기준표)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공개모집 관련 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점수표의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총점)"는 특정위원이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 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26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이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 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27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특정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은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28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공개 가능 여부

▣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내역 중 평정 점수 총점은 공개가 가능하나 직원 근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업무 공정성과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평가자 의견을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음

29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①근무성적·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과 같이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 참석자 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30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가 가능하나, 판·검사는 '법관징계법' 제26조 및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징계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31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 등)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그 공개 및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적으로 대학 종합감사결과 보고서는 공개하도록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02179)되었습니다.

32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회의내용(녹음)"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3 심의회나 위원회의 회의록은 모두 비공개대상인지

▣ 회의록의 공개여부는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회의내용을 살펴보고
- 회의 참석자의 발언내용 중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
- 위원들의 발언내용 공개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지
- 상기 정보들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 경우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부합될지 등을 고루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4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 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중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제6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최근의 위원 명단에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 사례를 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5 시청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 공개 가능 여부

▣ 시청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 및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에 직무상 응대한 직원의 음성 외에 제3자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당사자가 사건 관련 증거자료로 법원에 신청 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증거자료의 촉탁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소송제기(개인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는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 동의나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서 조항 각 목 중 '다목'인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를 비교·형량(교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서류로는 법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7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개별적·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성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설령 진정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지,

▣ 진정대상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지,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인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로 알아보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221)

-민원상담 내용 중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민원인은 민원상담을 요청함에 있어서 민원상담의 내용이 개인에게 있어서 민감한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를 염려하여 비공개요청을 하고 있는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민원상담 내용 중 비공개부분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개인식별정보와 분리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거의 없는 반면, 원고의 명예회복 내지 원고가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의 재판진행을 위하여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8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 "건축인허가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건축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이 ①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지 여부, ②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차후 준공 후 당해 건축 시설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39 도면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798)

▣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여부는 당해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0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및 원 하도급 대비표(최초, 최종) 공개 가능 여부

▣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등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가 가능 할 것입니다.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에는 각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그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는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41 입찰이 종료된 이후 추정금액, 산출근거가 비공개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추정금액이란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하기에 앞서 입찰대상자 및 적정입찰가격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배정을 하기 위하여 특정 공사에 소요되는 예상 금액에 대하여 산출하여 놓은 것으로서

▣ 이는 입찰과정에서의 공정한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 통상인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사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10누5615>

▣ 다만, 관련 정보중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42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상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8.20. 2003두8302)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제7호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재결례(노동부 200516132, 2005.11.26.)가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43 임금협정서 공개 가능 여부

▣ 임금협정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단체협약으로 임금과 관련한 사항(기본방침, 기본급 및 제수당·성과급·상여금 산정기준 및 금액, 적용범위, 근로형태, 근로시간, 근로일수, 결근처리, 주휴일 지정, 휴직에 대한 임금처리, 연료공급, 보조금 지급, 퇴직금, 부가가치세 감면분 월 선지급금 등)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하고 있는 정보라면 청구인이 ○○○회사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부분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44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 홍보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입니다.

▣ 반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 및 08-23015,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

45 지출증빙 중 개인정보 또는 공무원 정보

▣ 기관이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인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추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두8050, 대법원 2003두8302 >